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농의 대책안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해야



영돈농가 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농업은 타산업과 밀접히 연관된 국가의 식량산업인 만큼 농업의 개혁과 발전은 농업계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적·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정부라면 예산타령이나 타 계급 계층과의 형평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농가부채가 과거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개방정책, 저농산물정책, 김영삼정부의 신농정 실패에 있다는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농가부채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농가부채해결 요구는 IMF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나 서민들을 제쳐두고 농민들만 잘 살아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농가부채해결은 농가파산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이 갖는 300만명(144만농가의 부부노동과 가족노동을 합한 추정치)의 고용효과를 유지하고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며 벼랑끝에 놓여있는 현시기 농업을 유지시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자 최우선적 농정현안 과제이다.

전농은 기간 농업회생·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투쟁과 대책을 제시해 왔다. 전농의 농가부채해결 대책은 최소한의 농업회생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정부와 국회는 인식하고 적어도 중소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구제금융 수준의 농가부채 해결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농의 대책안

- 정책자금·상호금융대출 원금을 IMF의 영향을 벗어나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로 유예해야 함.

- 농업금융의 이자율은 농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금리 3%, 상호금융대출 금리 5%로 감면되어야 함.



이수금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 농업환경의 열악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과 농업생산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상환기간으로 대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상호금융구조를 정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거치기간을 둔 장기분할상환구조로 전환해야 함.

- 연대보증으로 인한 선량한 농가의 동반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 또는 영농조합의 파

산절차시 강제집행은 본인재산에 국한하고 연대보증을 선 농민들의 보증책임은 면제하는 것이 필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와 같이 국가부담으로 해야 함.

- 누적되어온 연체이자를 감면 조치하고 상환곤란한 이자분을 대출원금으로 처리하는 대책이 필요함.

- 국회차원에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농가경영안정과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업금융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어야 하며 농업의 경제외적 가치와 농업의 수익률에 기초한 농업환경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義豚**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한농연의 대책안

상호금융의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황 창 주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단체와 농림부, 농수축협이 구성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농가부채는 28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한 농가당 평균 2,004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60세 이상 농가를 제외한다면 약 2,7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책자금과 농축협 상호금융, 중앙회자금, 농축협 경영자금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채와 농촌신협,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농가부채에 농업인들은 시달리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12조 6,94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자율이 16.5%로 매년 이자부담만 2조 945억 원에 달하여 농가부채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농업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정책자금 인하 요구에 의해 IMF이전 금리인 5%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합의는 되었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농가부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농림부와 농협은 완강하게 상호금융의 금리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